

별첨1

한국사학진흥재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검진결과서 등의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9. 타 공공기관 채용 시 부정합격하여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별첨2
필기전형 평가요소 및 출제 범위
 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 직무지식평가(50점)
1. 직업기초능력평가

구분	출제 범위	문항수	시간
공통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 조직이해능력	50문항	60분

2. 직무지식평가 ※ 채용분야 내 전공 선택 없이 통합출제

구분	출제 범위	문항수	시간
행정	경영	50문항	50분
	행정		
	법학		

※ 대학(학사) 전공별 개론 수준의 과목 및 난이도로 출제

별첨4 채용비위 피해자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

□ [1단계] 이의 신청 및 처리

- ① 채용비위 피해자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 채용 담당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감사부서에 전달하도록 한다.
- ③ 감사부서는 이의신청 사안에 대하여 조사 후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인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 ④ 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⑤ 이사장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평가 관련 개인정보(응시자, 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2단계] 피해자 구제

- 채용비위 피해자는 다음 표에 따라 처리한다.

구 분	피해발생 단계	처리방법
① 피해자 특정 가능 : 직접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의 바로 다음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1차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최종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에게 1차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1차 면접 심사 응시 기회 부여
② 피해자 특정 불가능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피해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최종 면접심사 재실시
	1차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1차 면접심사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심사 재실시

※ 채용비위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별첨5
채용 이의 신청서

2026년 1차 직원 채용 이의 신청서			
성명		지원 분야	예) 정규직 행정 분야
연락처		e-mail	
이의 신청 내용	<p>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고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상기 본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 2026년 1차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해당 채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 . .</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이의신청인 (서명) </p>			

※ 신청 시 유의사항

- 조사를 위해 이의 제기사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작성하시고, 조사 결과는 신청서 상의 e-mail 또는 연락처로 통보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답변기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별첨6
블라인드 위배 등 채용 서류 검토 기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준수하며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가족관계,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요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블라인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블라인드 기준 및 주요 위반 유형 사례를 잘 숙지하신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이하 전형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블라인드 기준 안내
① 개인 신상정보

- 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성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연령을 유추할 수 있는 입학 및 졸업시기, 학교명, 학교 소재지 등 기재 불가

② 경력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경력”을 작성하며, 정식 기관명 기재 가능

③ 기타 유의사항

- 이메일 등 출신 학교명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금지
- 기업명, 학교명, 공공기관명 등은 직무관련 경력 확인을 위해 경력사항 작성란에만 기재 가능하며, 그 외 자기소개서·직무능력기술서 등에는 기재금지(단, 설명을 위한 기관명 언급은 허용 (예시 참조))

2. 입사지원서 검토 항목 기준 및 예시
□ 블라인드 위배: 아래 해당사항 시 불이익 처리(해당 문항 최하점 부여)

항목	위반 기준 및 예시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 성명란 외 지원서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예시 1) 나 “홍길동”은~ (예시 2) “홍길동씨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예시 1) “부산”에서 태어나 졸업 “부산”에서 자라왔으며~ (예시 2)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항목	위반 기준 및 예시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예시 1)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 (예시 2) 부모님(삼촌/이모/언니/오빠 등)을 따라~
생년월일 및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사지원서 생년월일 기재란 외에 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예시 1) 우리나라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예시 2) "19XX년에 OO띠"로 태어난 저는~ (예시 3) 18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예시 1)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의무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의경, 의무소방, 대체복무 등 남자만 가능한 군 복무형태 기재 (예시 2) 결혼 후 "남편/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예시 3) 조직 내 유일한 "남직원/여직원"으로서~
학교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국내외학교 모두 해당) (예시 1) 학교 이메일 계정 기입 abcde@snu.ac.kr (서울대학교 유추 가능) (예시 2) "고려대학교"에서 파견하는 봉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기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단, 지원자 본인에 관한 기업명이 아닌 설명을 위한 정보성 기업명 기재는 허용) (기업명 기재) 과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 → "불가" (설명을 위한 기업명 기재) "한국대학혁신재단"의 "A"사업과 같이, → "가능"

※ 상기 사례는 참고를 위해 작성된 기준이며, 실제 심사 시 '블라인드 기준 위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상기 사례에 없어도 불이익 처리

기관명 오기 : 아래 해당사항시 불이익 처리(해당 문항 최하점 부여)

항목	기준 및 예시
기관명 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명 오기의 경우 (허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KASFO) (예시) 한국사학재단, 한국사학진흥공사, 한국사학진흥공단 등

지원서 작성 불성실 : 아래 해당사항 시 불이익 처리(해당 문항 최하점 부여)

항목	기준 및 예시
내용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미만 분량 기술 동일 문구 반복, 특수문자만 입력 지원서 항목과 다른 내용 서술 항목별 동일한 답변 기재 타 기관명 제시 또는 타 기관에 대한 입사 지원 내용 기재 시

별첨7 장애인·중증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안내

□ 편의제공 대상

우리 재단 응시자 중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편의제공 신청방법

장애인·중증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중 희망자는,

- 지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
- 필기시험·면접시험 대상자가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담당자가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개별 통보

□ 편의제공 유의사항

- 하단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원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전형단계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필기시험	지체장애	상지	- 시험시간 연장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하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뇌병변장애		- 시험시간 연장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각장애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청각장애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면접시험	지체장애	상지	-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하지	- 면접장 내 이동 지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 장애		- 면접장 내 이동 지원 -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시각장애		- 면접과제지 확대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청각장애		- 안내사항 등 서면 제공 - 통역사(수화) 동반 허용 -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